

청주지방법원 2024. 9. 10 선고 2022가단615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

담당변호사 김종학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희태

피 고 D암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

변 론 종 결 2024. 8. 27.

판 결 선 고 2024. 9. 10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2022. 2. 28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3,103,918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 A에게 16,023,483원, 원고 B에게 7,410,153원, 원고 C에게 19,670,2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E 사이에 2022. 2. 28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하고, 이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각 순번에 따라 ‘제1 내지 제4 부동산’이라 한다.)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(채무자 E에 대한 2022. 6. 16.자 확정판결에 기한 각 손해배상채권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. 8. 27. 기준)

1) 원고 A : 16,023,483원(= 원금 10,048,577원 + 지연손해금 5,974,906원) 2) 원고 B :

7,410,153원(= 원금 4,641,064원 + 지연손해금 2,769,089원)

3) 원고 C : 19,670,282원(= 원금 12,289,368원 + 지연손해금 7,380,914원)

4) 합계 : 43,103,918원(= 원금 26,979,099원 + 지연손해금 16,124,819원)

나. 채무자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행위

1) E은 2022. 2. 17.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자, 2022. 3. 2.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‘2022. 2. 28.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행위’라고 한다.)’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2)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,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는 2022. 2. 28. 기준으로는 합계 10억

5,400만 원이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. 5. 20. 기준으로는 합계 11억 7,200만 원이다.

3)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기 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조합(이하 'F조합'이라 한다.)의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5억 5,200만 원, 피담보채무 4억 6,000만 원이고, 변론종결일 현재도 같다.)이 설정되어 있다.

4) 이 사건 증여행위가 있는 후인 2022. 3. 11. 및 2022. 4. 1., 제1, 2, 3 부동산에 관하여 G, H, I의 각 명의로 각 전세권설정등기(각 전세금 1억 원)가, 제4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어머니인 J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채권최고액 1억 원)가 각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E의 재산상황

1) 청주시 상당구 K 전 9㎡ : 시가 약 300만 원

2) 청주시 상당구 L 지상 2층 주택 :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날인 2022. 2. 28. J에게 증여하여 2022. 3. 2.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3) 충북 괴산군 M 대 364㎡ 및 지상 2층 주택 :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날인 2022. 2. 28. 피고에게 증여하여 2022. 3. 2.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4) 충북 괴산군 N 전 5,762㎡ 중 3,452/5,762 지분 : 시가 약 6,560만 원이나, 이를 초과하여 2019. 5. 29. F조합(채권최고액 3,900만 원, 피담보채무 3,000만 원)과 2022. 3. 2. J(2022. 2. 28. 설정계약, 채권최고액 7,000만 원)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0호증, 을 6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), 시가감정축탁 결과,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법원의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, 채무자 E은 2022. 2. 28. 이 사건 증여행위 등을 통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으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청주시 상당구 K 토지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
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.

2) 피고는, 충북 괴산군 N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J의 위 근저당권이 2024. 4. 3.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E이 자력을 회복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위 토지의 시가 약 6,560만 원에서 2019. 5. 29.자 F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,000만 원을 공제한 3,560만 원에 청주시 상당구 K 토지의 시가 약 300만 원을 더해도 합계 3,860만 원으로서,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43,103,91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,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변함이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범위 및 가액배상

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F조합의 근저당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인 11억 7,2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6,000만 원을 공제한 7억 1,200만 원의 범위 내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44928 판결 등 참조)에서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43,103,918원(= 원금 26,979,099원 +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6,124,819원)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행위를 취소하고, 원고들의 각 채권액 상당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,023,483원, 원고 B에게 7,410,153원, 원고 C에게 19,670,2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송경근

별지